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51
----------	------

2018년 3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18년 2월 6일
- 다. 회부일 : 2018년 2월 9일
- 라. 상정일 : 제27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2월 2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1) 제출이유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우리 시가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8년 상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청소년 미디어 활동 지원·육성,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문화 확산 및 안정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관리·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육성하는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
-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바,
- 이에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전문적 지식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3)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들의 정보문화 활동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
-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문화 확산 지원 사업
- 청소년 미디어 역기능 예방 및 상담사업
- 미디어와 관련된 새로운 청소년 정보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및 어린이 종합정보사이트 관리 운영
-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시설 안전관리
- 그밖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5
- 개관일자 : 2000.02.24.
- 시설규모 : 연면적 1,395.71 m^2 (지상5층, 지하1층)
- 이용대상 : 청소년
- 위치도



- 5) 민간위탁기간 : 3년(2018.07.01. ~ 2021.06.30.)
- 6)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7) 소요예산 : 1,357백만원('18년)
-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법령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화시설로 ‘(재)푸른나무 청예단’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나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3년간(2018.7.1.~2021.6.30.) 재위탁하려는 것임.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개요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5
- 개관일자 : 2000.02.24.
- 시설규모 : 연면적 1,395.71㎡(지상5층, 지하1층)
-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들의 정보문화 활동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
 -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문화 확산 지원 사업
 - 청소년 미디어 역기능 예방 및 상담사업
 - 미디어와 관련된 새로운 청소년 정보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및 어린이 종합정보사이트 관리 운영
 -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시설 안전관리
 - 그밖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기간 : 3년(2018.07.01. ~ 2021.06.30.)
-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 소요예산 : 1,357백만원('18년)

- 청소년 미디어 활동 지원 및 육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안정적,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음.

1)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 달성 및 공공성 확보와 수탁기관의 예속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청소년시설의 시설장을 상근하도록 정하고 있고, 수탁기관의 내부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²⁾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미디어센터의 내부규정은 시설장을 비상근으로 정하고 있는바, 센터 내부규정의 제정·변경시 평생교육국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자체 규정내 급여규정 개선 및 채용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성과 평가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수탁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이 주관하고 있는 업무의 관계법령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③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51
----------	------

제출년월일 : 2018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우리 시가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8년 상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청소년 미디어 활동 지원·육성,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문화 확산 및 안정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의 미디어 활동을 지원·육성하는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
-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바,
- 이에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다양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전문적 지식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들의 정보문화 활동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및 서비스 제공
-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문화 확산 지원 사업
- 청소년 미디어 역기능 예방 및 상담사업
- 미디어와 관련된 새로운 청소년 정보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및 어린이 종합정보사이트 관리 운영
- 청소년미디어센터의 시설 안전관리
- 그밖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5
- 개관일자 : 2000.02.24.
- 시설규모 : 연면적 1,395.71㎡(지상5층, 지하1층)
- 이용대상 : 청소년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3년(2018.07.01. ~ 2021.0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357백만원('18년)
- 산출근거

- 인건비 913백만원, 물건비 150백만원, 경상이전 160백만원, 자본지출 10백만원, 사업비 124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팀 문선경 (☎2133-4115)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 민간위탁 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사업내용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관리·운영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5
- 시설규모 : 연면적 1,395.71m²(지상 5층, 지하 1층)
- 주요사업 : 청소년 미디어 활동 지원·육성 사업,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문화 확산 사업, 청소년 및 어린이 종합정보사이트 관리 운영 등
- '18년예산 : 1,357백만원

○ 위탁 추진경과

- 1차 : 1999. 7. 1.~2002. 6.30.(3년,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
- 2차 : 2002. 7. 1.~2005. 6.30.(3년,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
- 3차 : 2005. 7. 1.~2008. 6.30.(3년,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
- 4차 : 2008. 7. 1.~2011. 6.30.(3년,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
- 5차 : 2011. 7. 1.~2013. 6.30.(2년,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
- 6차 : 2013. 7. 1.~2016. 6.30.(3년,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
- 7차 : 2016. 7. 1.~2018. 6.30.(2년, 재단법인 푸른나무청예단)

□ 성과평가 개요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평가대상 기간 : '15.1.1. ~ '16.12.31.(2년간)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병행

○ 평가 결과 요약

운영 및 관리 (11)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5)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19)	인사 및 조직 (20)	환경 및 안전 (20)	대외 협력 및 홍보 (5)	종합평가 (10)	합계 (100)
10.6	14.4	18.2	20	20	4.4	8	95.6

○ 운영 및 관리

평가 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1. 운영 및 관리 (11점)	1.1 기관 운영계획	4	1.1.1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	2.0	1.92	○ 특화시설 설립추진에 맞게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성과 발전계획이 적합함. 다만 연도별 예산계획, 사업방향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함 ○ 연간운영계획서는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 청소년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별 추진내용이 세부적으로 작성하였음. 다만 각종 연간계획서 일원화 검토가 필요함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중기, 연간) 및 평가관리 매뉴얼을 작성 구비하여 효율성 극대화하기 노력 하고 있음 ○ 운영대표자의 자격이 법적기준은 준수하고 있으며, 시설장으로서 공식적 직위와 권한을 갖고 있음 ○ 특화시설 명의의 운영에 필요한 독자적 운영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심의기구를 거쳐 관리하고 있음. 다만 규칙제정 시 승인 기구(법인 또는 서울시)가 명확하지 않음.
			1.1.2 연간 운영계획 수립의 체계성	2.0	1.68	
	1.2 기관 운영체계	7	1.2.1 운영대표자의 자격 기준 및 시설장 여부	5.0	5.0	
			1.2.2 운영규정의 관리 수준	2.0	2.0	

○ 청소년 이용 및 참여

평가 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2. 청소년 이용 및 참여 (15점)	2.1 청소년 이용	9	2.1.1 전체이용자 대비 청소년 시설이용률	5.0	5.0	○ 전체 이용자 대비 청소년시설 이용률 92% 수용정원대비 시설이용률 127%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특화시설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설장 간담회 개최 등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동아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 스스로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2.1.2 수용정원 대비 연간 청소년 시설이용률	4.0	4.0	
	2.2 청소년 참여도	6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3.0	2.4	
			2.2.2 자체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3.0	3.0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19점)	3.1 연간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7	3.1.1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체계성	4.0	3.2	○ 프로그램 개발 계획서는 없으나 개발을 위한 회의 및 워크숍 의견을 반영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평가매뉴얼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특화시설에 부합한 특화된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음.
			3.1.2 연간 프로그램 평가 운영의 적절성	3.0	3.0	
	3.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12	3.2.1 청소년 특화전문활동 프로그램의 비율	4.0	4.0	
			3.2.2 청소년 특화전문활동 사업비 수준	4.0	4.0	
			3.2.3 청소년 특화전문활동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성	4.0	4.0	

○ 인사 및 조직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4. 인사 및 조직 (20점)	4.1 직원 확보율	8	4.1.1 직원 확보의 수준	4.0	4.0	○ 전체직원 수 25명, 정규직20명,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2인 ○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직원들의 의욕적이고 능동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를 지원하고 있음. ○ 성범죄 경력 모두 확인, 안전교육 연 2회 이상, 폭력예방 교육 연1회 실시하였음.
			4.1.2 정규직 청소년지도사 확보 수	4.0	4.0	
	4.2 직원 전문성 및 안전성	12	4.2.1 직원 1인당 직무 연수 참여시간	3.0	3.0	
			4.2.2 직원 대상 복지지원 수준	3.0	3.0	
			4.2.3 직원의 성범죄 경력 확인 여부	2.0	2.0	
			4.2.4 직원의 안전교육 실시여부	2.0	2.0	
			4.2.5 직원의 폭력예방 교육 실시여부	2.0	2.0	

○ 환경 및 안전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5. 환경 및 안전 (20점)	5.1 시설환경 및 안전	20	5.1.1 수련시설 시설기준 준수여부	3.0	3.0	○ 특화시설 기준은 준수, 안전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배상책임보험 3개년 모두 기준에 맞게 가입, 매월 자체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음.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안전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시행 전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 기구를 비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5.1.2 안전관리계획서의 체계성	4.0	4.0	
			5.1.3 안전보험 가입	4.0	4.0	
			5.1.4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	4.0	4.0	
			5.1.5 청소년의 안전관리	5.0	5.0	

○ 대외 협력 및 홍보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배점	평점	평가결과
6. 대외 협력 및 홍보(5점)	6.1 대외협력 및 홍보	5	6.1.1 대외협력 및 연계 정도	3.0	2.4	○ 대외협력계획을 수립하여 공식적인 연계 실적 등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등에서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 별 다양한 방법 등으로 홍보하고 있음.
			6.1.2 홍보활동의 노력 수준	2.0	2.0	

○ 종합평가

평가영역	평가항목	항목 배점	평가지표	평가 기준	점수	평가결과
7. 종합 평가(10점)	7.1 종합평가	10	7.1.1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발전 지원 노력수준	5.0	4.0	○ 지자체 지원금액 증가율 158% 대외사업 등 사업 추진 시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운용(중기 연간) 및 평가매뉴얼을 자체적으로 개발 하는 등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 간소화 및 일원화가 필요함
			7.1.2 전반적인 발전노력 수준	5.0	4.0	

□ 연도별 예산 대비 집행 실적

(단위 : 원)

○ 총괄 정산내역

연도	예산액	교부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이자 발생액	총반납액
2017	1,334,592,000	1,334,592,000	1,330,016,843	4,575,157	158,116	4,733,273
2016	1,323,936,000	1,319,119,000	1,317,756,557	1,362,443	202,528	1,564,971

○ 세부 집행내역

연도	합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사업비
2017	1,330,016,843	846,089,050	189,755,303	150,525,280	10,876,220	132,770,990
2016	1,317,756,557	785,272,880	235,164,165	143,153,520	21,479,670	132,686,322

□ 민간위탁사업 향후계획

○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재위탁 협약 체결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로 위탁법인 선정, 협약 체결

○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운영 개선방안 모색

- 성과평가 결과 환류 및 미흡한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개선방안 모색 및 실행